

	규정	문서번호	TWP-C113	
		제정일자	2017 .09. 29.	
	LTT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1/3

## 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
- 제3장 위원회
- 부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2017. 09. 29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					승 인
직 책	사무처장	기획홍보처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교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C113	
		제정일자	2017 .09. 29.	
	<b>LTT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</b>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2/3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LTT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본 센터는 대학의 교육이 지향할 목표와 가치정립 및 전략을 수립하고 대학교육의 혁신모델의 연구개발을 통한 대학 위상 정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대학 교육의 목표 및 전략 수립
- ② 대학의 전공, 교양, 비정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계 운영전략 수립
- ③ 대학 교육의 혁신 모델 연구
- ④ 대학 교육의 질관리 모델 연구
- ⑤ 정부사업 및 외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교육 운영 전략 수립
- ⑥ 기타 교육혁신 관련 업무

## 제2장 조직

**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책임교수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원과 계약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진행한다.

## 제3장 위원회

**제5조(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TT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”)를 둔다.

② 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③ 운영위 위원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NCS지원센터장, 교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
④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총장이 따로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C113	
	<b>LTT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</b>		제정일자	2017 .09. 29.	
			개정일자		
			개정번호	페이지	3/3

정한다.

**제6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교육의 목표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전공, 교양, 비정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계 운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3. 정부사업 및 외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교육 운영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혁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
**제7조(운영세칙)** 이 외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